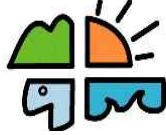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708호 2012년 6월 28일(목)

공 고

-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..... 2
- 건축허가(신고)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..... 3

회 란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공 시 송 달 공 고

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(이행강제금)에 의거 이 행강제금 반복부과(2012년 2분기)하고자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제 목 :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12. 6. 28. ~ 2012. 7. 12.(15일간)
3. 공시송달대상자

성 명	주 소	과 목	부과액 (원)	내 용	송달불능 사 유
김종임	속초시 미시령로 3359번길 4, 20*동 *03호 (교동, 현대2차아파트)	이행강제금	1,194,280	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처분사전통지	폐문부재
최성환	속초시 영금정로 7-* (동명동)	"	714,090	"	주소불명

4. 공시송달내용

건축법 제80조(이행강제금) 4항에 의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(2012년 2분기)하고자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 기간 내에 속초시 도시디자인과(☎ 639-2457)로 연락주시기 바라며,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12. 6. 28.

속 초 시 장

건축허가(신고)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(신고)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·공고 합니다.

2012년 6월 28일

속 초 시 장

1. 공 고 명 : 건축허가(신고)에 따른 도로지정
2. 도로위치 :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109-3번지
3. 공고기간 : 2012. 6. 28.~ 2012. 7. 17.(20일)
4. 도로지정 조서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허가(신고)번호	비고
			공부 면적	지정 면적			
속초시 조양동	1109-3번지	철도 용지	1,862	60	이영록	2012-신축허가-47 (2012. 6. 28.)	

5. 공고방법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
6. 관계도서 : 속초시 도시디자인과 비치(열람가능)
7.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건축지도담당(033-639-245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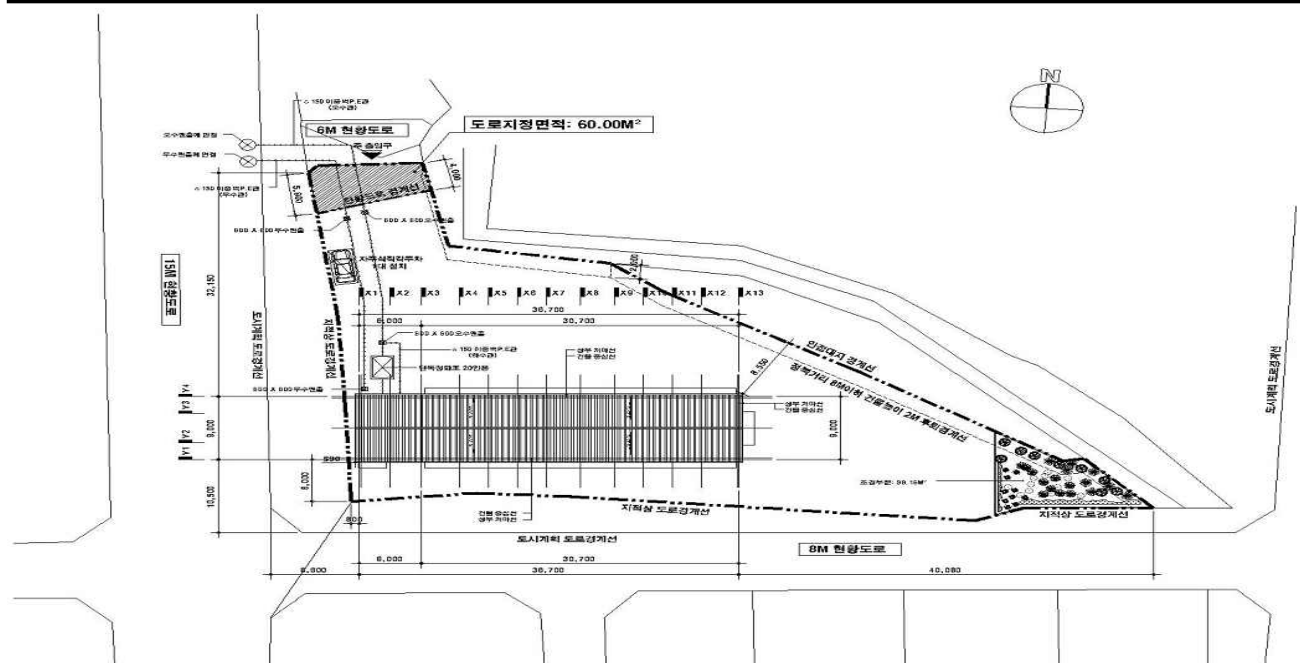
위치도 및 현황도



위 치 도

축척

NONE



현황도

축척

NONE